

「2020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추진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하여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유치 및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범위) 이 협약은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이하“협업기관”이라 한다.) 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이하 “혁신사업”이라 한다.)」의 역할분담 및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정한다.

제3조(협력내용) 각 기관은 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유치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협력한다.

1. 지역의 경제·산업·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2.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및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 기반 구축
3. 지역혁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사업 간 연계 촉진
4. 지역 인재육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 구축

제4조(역할분담) 협업기관은 제3조의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한다.

1. 지자체는 혁신사업의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대학과 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2. 대학은 지역의 경제·산업·사회·문화 발전을 위해 연구기능 및 지역밀착 기능을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지역혁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혁신사업의 유치 및 성과확산을 위해 대학교육 혁신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 지역혁신기관은 혁신사업의 유치·추진을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사업 간 연계를 촉진한다.

제5조(협의회 구성·운영) 이 협약서에서 정한 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적으로 업무에 관한 협의를 위해 「강원지역협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해지) 협약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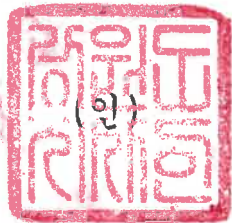
제7조(협약서의 발효)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강원도, 강원대학교, 강원도교육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릉원주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연구원, (재)강원테크노파크,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KIST 강릉분원은 위 협약에 합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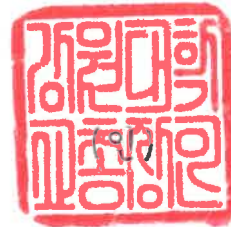
2020년 6월 5일



도지사 최 문 순



총장 김 현 영



총장 반 선 섭



미래캠퍼스

부총장 권 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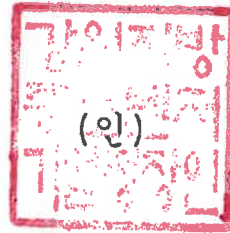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정재경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한종호



강원연구원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원장 직무대행 노승만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김성인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Chuncheon Bioindustry Foundation

원장 유지욱



wmit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강릉과학산업진흥원
Gangneung Science & Industry Promotion Agency

원장 김철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분원장 하성도

